

1. 개정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된 행정규칙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견후견·한정후견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합원의 당연 탈퇴사유와 조합 및 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합원의 당연 탈퇴사유 및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비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안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나. 연합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승인권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55조제10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제55조제10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탈퇴) ① (생 략)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2. (생 략) 3. <u>금치산자</u>	제14조(탈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u>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u>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u>금치산자</u> 2. <u>한정치산자</u> 3. ~ 7.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u>피성년후견인</u> 2. <u>피한정후견인</u>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u>금치산자</u> 2. <u>한정치산자</u> 3. ~ 7.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u>피성년후견인</u> 2. <u>피한정후견인</u>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업의 종류) 연합회는 그	제55조(사업의 종류)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 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u>공정거 래위원회</u>의 승인을 얻은 사업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u>중소벤 처기업부장관</u>-----
---	---